의료비보장특약 약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주계약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⑤ 주계약이 해지 (解止),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주피보험자가 의료보험법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가족형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하는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의료보험법(이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의료보험증상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가족형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증상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피부양자(원격지 의료보험증상의 피부양자를 포함합니다.)란에 기재된 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종피험자로 합니다.
   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나. 주피보험자의 자녀

②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갱신시 제 1항에 해당되는 종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갱신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일 2주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이 특약의 체결후에 종피보험자가 제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를 추가가입시킨 경우 종피보험자는 갱신계약일에 한하여 추가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제 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보험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내의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의료시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서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table>
<tr><th>구 분</th><th>지 급 사 유</th><th>지급내용</th></tr>
<tr><td>의료
급여금</td><td>피보험자가 질병,부상 또는 분만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의료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이하 "법정급여"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법정급여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다음과 같을 때
<table>
<tr><td>10만원초과 15만원이하</td><td>2만원</td></tr>
<tr><td>15만원초과 20만원이하</td><td>3만원</td></tr>
<tr><td>(이하 5만원씩 증가함)
.
.
.
.</td><td>(이하
1만원씩
증가함)
.
.</td></tr>
<tr><td>495만원초과 500만원이하</td><td>99만원</td></tr>
<tr><td>500만원초과</td><td>100만원</td></tr>
</table>
</td><td></td></tr>
</table>

② 제 1항의 경우 의료급여금의 급여기간은 의료보험법에서 정한 법정급여기간 이내로 합니다.

③ 제 1항의 경우 의료급여금의 1회입원당 지급금액의 최고한도(100만원)는 계속중인 입원(요양취급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④ 제 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속 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 이전의 진단에 의하여 확정된 질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니다)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6조 (고지 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7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 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 1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라 제 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납입 유예기간 (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9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10조 (특약의 갱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갱신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갱신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갱신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갱신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갱신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갱신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이 70세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제 11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재해입원의 경우)

3. 진료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 (요양취급기관 발행)

4. 보험증권

5. 의료보험증

6.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7.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 1항 제 3호중 법정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진료비 명세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11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3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15조 (관계법령 개정등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의료보험법등이 개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갱신시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주계약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